

반부패 청렴활동 우수지사에 대한

제4회(2015) 청렴인증제(CHP) 시행계획

1. CHP(Clean Heat Plant) 인증제도

- 청렴인증제도는 현재 국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패행위 미발생, 반부패·청렴 활동이 뛰어난 부서나 개인을 평가하는 제도
- 평가 결과에 따라 청렴 인증서 수여, 포상금 지급, 감사 면제 및 성과 평가 가산점 부여 혜택 제공(2012년도 최초 시행)
- 2015년도 1회 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15.4.17) 설명회를 통해 지사 의견 수렴 및 반영(인센티브 확대 및 평가지표와 점수 비중 조정)

※ 기 인증지사

구 분	1위	2위	비 고
2012년	서울중앙지사	세종지사	
2013년	고양사업소	파주지사	
2014년	화성지사	고양사업소	3위(청주지사)

2. 시행 일정

- 2015. 5월 : 청렴인증제 시행계획 알림(전 지사)
- 2015. 5월~9월 : 지사별 청렴활동 추진
- 2015. 10월 : 지사별 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인증지사 선정 (필요시 현지 실적 검증)

3. 청렴활동 인정기간

: 2014. 11. 01 ~ 2015. 09. 30

4. 인증 지사 선정시 인센티브 확대

- 종합감사 시행 검토대상 2년 유예
- 청렴 인증서 수여
- 포상금 지급(1위 지사(1EA) 100만원, 2위 지사(2EA) 각 70만원)
- 내부경영평가 평가점수 가산(1위 지사 0.3점, 2위 지사 0.2점)
- 해외연수 기회 부여
- 3년 연속 인증지사의 경우 차년도 청렴인증제 자율화(평가면제)
: 내부경영 가점(0.3점) 자동 부여(단, 청렴프렌즈 운영 필수)
- 청렴마일리지 가점 반영(청렴인증지사, 청렴홍보콘텐츠 제출 및 당선자 등을 포함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하여 추후 송부(5월말) 예정)
: 청렴마일리지를 통해 청렴인상(감사상), 윤리인상(사장상) 포상 추천
- 패널티 부여 : 제출 실적이 일정 수준 미달 시 차년도 기강점검 확대

5. CHP 인증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 CHP 인증기준
 - 총 5개의 대분류 기준과 세부 소분류 기준으로 구분하여 인증기준을 구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인증부서를 선정

대분류	내 용	점수		
		계량	비계량	합계
기본요건	○부패·부정 등의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야 함	미충족시 미평가		
① 청렴활동 참여도	○ 청렴프렌즈 구성·운영 실적	10	5	15
	○ 자체 청렴 우수활동 (인정예시) 청렴프렌즈 활동 제출 가능	5	5	10
	○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출 - 규정(사규,지침,내규,매뉴얼)내의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적 제도 개선 의견제시 - 부패연관성, 효과성, 창의성, 제도화 가능 용이성 평가	5	10	15
	○ 청렴홍보콘텐츠(단계별)	10	-	10
	○ 지원 노력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1건) ※ 매체·장소의 다양성 등 노력도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등 홍보 실적(2건) ※ 전광판,소식지,고지서 등 활용 노력	5	5	10
	○ 권익위 향후 추가 요청 과제 완료시(가점)	(+)5		
	○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방만경영 자율점검 실시(공직기강점검) - 분기 제출하는 공직복무관리계획 추진실적으로 대체	5	5	10
③ 청렴교육 이수실적	○ 본사주관 윤리·청렴교육시 참석률 - 휴가자, 교육, 출장자 현원에서 제외	10	-	10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이행 횟수 - 청렴활동 인정기한 내 2회 이상 ※ 실질적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평가	5	5	10
④ 감사 지적사항	○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징계처분	5	-	5
⑤ 업무 우수사례	○ 내·외부 감사 우수사례 및 내부평가에 의해 인정된 업무 우수사례	5	-	5
계		65	35	100

□ CHP 세부평가기준

○ 기본요건으로 부패·부정 등의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사 또는 직원이 소속된 지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청렴활동 참여도 (60점+가점5)

가. 청렴프렌즈 구성·운영 실적

- (활동) 청렴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인정

<<예시>>

- ① 청렴활동(캠페인) 참여 ② 청렴 제도개선 ③ 청렴홍보콘텐츠
④ 방만경영 자율점검 ⑤ 청렴교육 내용 등을 공유 또는 수강 등

나. 자체 청렴 우수활동 실적제출

- '14년 11월 1일부터 '15년도 9월 30일까지 수행한 지사의 청렴 우수활동실적을 개요, 세부 추진내용 및 효과를 요약기술 및 관련서류 제출
※ “청렴프렌즈” 활동실적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수사례 1건으로 인정
※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청렴지킴이 운영, 주민 청렴평가단 참여 등 주부 모니터링단 운영 포함시 추가 가점

다.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출

- 사규 등 우리공사 규정 중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제출기한 : 6.30.(화), 규정 개정 및 효과성 산출 기한 고려)
※ 제출기한 업무 및 이후 접수분은 평가시 감점(외부기관 평가 의뢰)
※ 제도개선은 규정별 1건 제출(최대 5건) 가능하며, 타지사와 개선내용 동일시 접수일순으로 인정

라. 청렴홍보 콘텐츠

- 청렴홍보 콘텐츠 공모전 출품 및 수상실적에 따른 평가
: 청렴포스터, 슬로건, 마스코트명 등(참가자 전원 기념품 지급)

마. 지원 노력도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요청 사항 홍보 노력 평가
: 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 후 제공 예정(5월말)

청렴활동 구분	배점 [총55점]	비고															
청렴프렌즈 구성·운영 실적(15점)	계량 10점 비계량 5점	- 청렴프렌즈 구성 시(계량 5점) - 청렴프렌즈 운영 시(계량 5점) - 운영 실적의 정량 평가(비계량 5점) (표1) <table border="1"> <tr> <th>등급</th> <th>지사 수</th> <th>배점</th> </tr> <tr> <td>A</td> <td>3개</td> <td>5점</td> </tr> <tr> <td>B</td> <td>5개</td> <td>3점</td> </tr> <tr> <td>C</td> <td>5개</td> <td>2점</td> </tr> <tr> <td>D</td> <td>3개</td> <td>1점</td> </tr> </table>	등급	지사 수	배점	A	3개	5점	B	5개	3점	C	5개	2점	D	3개	1점
등급	지사 수	배점															
A	3개	5점															
B	5개	3점															
C	5개	2점															
D	3개	1점															
자체 청렴 우수활동 실적 제출(10점)	계량 5점 비계량 5점	- 실적 제출 시(계량 5점) - 세부활동과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비계량 평가(5인 심의위원 심사) : 표1. 배점표 참조															
자율적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제출(15점) ※경영관리팀 주관 내부 경영평과 지표와 동일 과제임(붙임2 양식 참조)	계량 5점 비계량 10점	- 실적 제출 시 계량 만점(5점) - 부패연관성, 효과성, 창의성, 제도화 가능 용이성 평가(5인 심의위원) <table border="1"> <tr> <th>등급</th> <th>지사 수</th> <th>배점</th> </tr> <tr> <td>A</td> <td>2개</td> <td>10점</td> </tr> <tr> <td>B</td> <td>3개</td> <td>8점</td> </tr> <tr> <td>C</td> <td>4개</td> <td>6점</td> </tr> <tr> <td>D</td> <td>7개</td> <td>4점</td> </tr> </table>	등급	지사 수	배점	A	2개	10점	B	3개	8점	C	4개	6점	D	7개	4점
등급	지사 수	배점															
A	2개	10점															
B	3개	8점															
C	4개	6점															
D	7개	4점															
청렴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실적(10점)	계량10점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콘텐츠별 배점</th> </tr> <tr> <td>최우수상</td> <td>5점</td> </tr> <tr> <td>우수상</td> <td>3점</td> </tr> <tr> <td>장려상</td> <td>2점</td> </tr> <tr> <td>출품 기본점수</td> <td>1점</td> </tr> <tr> <td>미제출시</td> <td>0점</td> </tr> </table> ※ 분야별 모두 출품시 기본점수 3점이며, 득점 가능점수 최대 10점	구분	콘텐츠별 배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	3점	장려상	2점	출품 기본점수	1점	미제출시	0점			
구분	콘텐츠별 배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	3점																
장려상	2점																
출품 기본점수	1점																
미제출시	0점																
지원 노력도(10점) ※ 리플릿 등 제작 예정이며, 외부 홍보는 일시에 시행 가능	계량 7점 비계량 3점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 2점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홍보 : 2점 - 우월적 지위 남용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홍보 : 1점 - 상기 홍보의 매체·장소의 다양성 등 노력도(비계량 5점, 표1. 배점표 참조) ※ 세부내용 추후 송부 예정															

○ 자체감사 활성화 (10점)

- 방만경영 예방 체크리스트 자율점검 시행 (1회/분기)
- On 감사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사용(주말,심야 등) 관련 점검(연중)

자체감사 구분	배점 [총20점]	비고
방만경영 예방 체크리스트 자율점검 시행 ※분기 제출하는 공직복무 관리계획 추진실적으로 대체	계량 2점 비계량 5점	-시행 기본점수 : '14.4~'15.3분기(4회) (1회 시행시 마다 0.5점, 총 2점) -점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 : 표1. 배점표 참조
On 감사시스템 상시모니터링법인카드 사용 점검	계량 3점	-규정 위반 사용시 0.5점/1회 감점

○ 본사주관 윤리·청렴교육시 참석률 (10점, 계량)

- 경영관리팀과 청렴감사팀이 주관하는 윤리·청렴교육시 직원 참석률 : 휴가자, 교육, 출장자 현원에서 제외
→ 산식 = 교육참가자÷지사 인원 × 100%
(상위부터 내림차순 등급으로 점수 부여, 연2회 교육 예정)

청렴교육 실적 구분	등급 부여 지사 수	배점	비고
A등급	4개 지사	10	상위부터 1~4위
B등급	4개 지사	8	4~8위
C등급	4개 지사	6	8~12위
D등급	4개 지사	4	13~16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이행 횟수 (10점)

- 청렴활동 인정기한 내 2회 이상
: 교육 1회 2.5점, 2회 5점

- 실질적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수, 과급효과 등을 감안 비계량 평가
: 표1. 배점표 참조, 청렴프렌즈 교육시 가점

○ 감사 지적사항 (5점, 계량)

- 평가 직전년도('14년도 수검분)부터 '15.9.30.까지 내부 감사결과로서 징계처분(경고, 주의 포함)이 없는 경우, 2.5점을 부여하고 발생 건당 0.5점씩 감점
- 평가 직전년도부터 외부 감사결과로서 징계처분(경고, 주의 포함)이 없는 경우, 2.5점을 부여하고 발생 건당 0.5점씩 감점
- ※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감실적이 없을 경우, 기본 3점(1.5+1.5) 부여

구분[지적사항]	배점 [총5점]	비고
내부 감사결과 징계처분 (경고, 주의 포함)	계량2.5점	건당 0.5점씩 감점
외부 감사결과 징계처분 (경고, 주의 포함)	계량2.5점	건당 0.5점씩 감점

○ 우수사례 (5점, 계량)

- 평가 직전년도부터 내·외부 감사결과 및 내부 평가에 의해 인정 (장려상 이상)된 업무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발생 건당 1점씩 부여 하고, 최대 5점 부여
- ※ 전년도 청렴인증제 평가 대상기간 이후부터 장려상 이상의 업무 우수사례만 해당

구분[우수사례]	배점 [총5점]	비고
장려상 이상의 우수사례	계량5점	건당 1점씩 부여(최대5점)